

제239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심사대상 조례안 공고

지방자치법 제66조의2에 따라 제239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심사대상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18일

순 천 시 의 회 의 장



1. 조례안 목록

- 순천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순천시 상징물 관리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순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순천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순천시민의 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순천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순천시사편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순천시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 순천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순천시 지하안전위원회 운영 조례안
- 순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순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순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입법예고 기간 : 2020. 3. 18. ~ 3. 23.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0년 3월 23일까지 순천시의회 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우편 또는 이메일

1) 주 소 : 전남 순천시 장명로 30 (장천동, 순천시의회) / 우 : 57956

2) 이메일 : gowoon@korea.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순천시 의회사무국(전화 : 061-749-4958)으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천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혜정 의원 발의)

의안 번호	제3166호
----------	--------

발의연월일 : 2020. 3. 17.

발 의 자 : 박혜정 의원

1. 개정이유

- 현재 조례 상 일부 용어를 혼용하고 있어 일원화하여 통일성을 기하고, "순천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의 기능을 담당하던 "순천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위원회"가 폐지됨에 따라 그 기능을 "순천시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하는 등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 상 혼용하고 있는 용어 정비(안 제2조, 안 제10조)
 - "학교 밖 청소년 지원기관"과 "대안교육기관"으로 혼용하고 있는 용어를 "대안교육기관"으로 일원화하여 조문 개정
- "순천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 기능을 대행하는 위원회 변경(안 제6조)
 - (현행) 순천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위원회
⇒ (개정) 순천시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
- 학교 밖 청소년 종합지원계획 대상 사업 추가(안 제8조)
 - (추가) 학교 밖 청소년 전용 자치공간 확대에 관한 사항

3. 개정조례안 : 별첨

4. 관련법령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5. 예산상황 : 예산의 범위에서 수립·시행하는 계획에 따른 재정 수반

순천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4호 중 “학교 밖 청소년 지원기관” 을 “대안교육기관” 으로 한다.

제6조 제목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 로 하고, 제1항과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제3항과 제4항을 삭제한다.

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순천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 라고한다)를 두되, 그 역할과 기능은 「청소년 복지 지원법」 제10조에 따른 순천시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가 대행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교 밖 청소년 종합지원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에 대한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
3. 학교 밖 청소년 유관기관 네트워크 및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학교 밖 청소년 인권침해 및 차별사태에 대한 관계기관 진정 및 개선요구에 관한 사항
5. 순천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및 발전 방안
6. 후견인제 등 사회적 지원 방안
7.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 제12조를 각각 제7조, 제8조로 하고 제7조부터 제9조 및 제11조를 삭제한다.

제8조(중전의 제12조) 제2항 제6호를 제7호로 하고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학교 밖 청소년 전용 자치공간 확대에 관한 사항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학교 밖 청소년 교육프로그램 지원) ① 시장은 청소년 육성단체 또는 대안 교육기관 등이 학교 밖 청소년 교육프로그램을 추진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을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을 하기 위한 세부기준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시장은 제1항의 지원금을 교부받은 기관, 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지원을 중단하거나 그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서 제3호의 경우에는 시장의 사전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원금을 교부받은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2. 해당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경우
3. 해당 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다른 기관·단체의 유사사업과 중복 지원을 받는 경우
5. 그 밖에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허위사실이나 중대한 잘못이 있는 경우

제14조를 제10조로 하고, 제10조(중전의 제14조) 제2항 제9호 중 “학교 밖 청소년 지원기관”을 “대안교육기관”으로 한다.

제15조부터 제20조를 제11조부터 제16조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생략)</p> <p>1. ~ 3. (생략)</p> <p>4. "<u>학교 밖 청소년 지원기관</u>"이란 제3호의 "대안교육"을 행하는 기관으로서, 「초·중등교육법」 제4조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한 기관을 말한다.</p> <p>5. (생략)</p>	<p>제2조(정의) (현행과 같음)</p> <p>1. ~ 3. (현행과 같음)</p> <p>4. "<u>대안교육기관</u>" ----- ----- ----- -----.</p> <p>5. (현행과 같음)</p>
<p>제6조(<u>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 구성</u>)</p> <p>① <u>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지원계획 및 대안교육기관의 교육활동 발전에 관한 사항과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순천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 라고 한다)를 둔다. 다만, 「순천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순천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위원회가 그 역할을 대신할 수 있다.</u></p> <p>② <u>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u></p>	<p>제6조(<u>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u>)</p> <p>① <u>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순천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 라고 한다)를 두되, 그 역할과 기능은 「<u>청소년 복지 지원법</u>」 제10조에 따른 <u>순천시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 위원회</u>가 대행한다.</u></p> <p>② <u>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학교 밖 청소년 종합지원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u> 2. <u>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에 대한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u> 3. <u>학교 밖 청소년 유관기관 네트워크 및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u>

현행	개정안
<p>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순천시(이하 "시"라 한다) 업무담당 국·소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순천시의회 의원 2명 2. 시 업무담당 국장 3. 전라남도 순천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추천하는 사람 4. 청소년의 교육, 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청소년사업을 시행하는 비영리 법인 및 단체, 대안교육기관의 대표 6. 학교 밖 청소년 및 보호자 대표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ol style="list-style-type: none"> 4. <u>학교 밖 청소년 인권침해 및 차별 사례에 대한 관계기관 진정 및 개선 요구에 관한 사항</u> 5. <u>순천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및 발전 방안</u> 6. <u>후견인제 등 사회적 지원 방안</u> 7. <u>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u> <p style="text-align: center;">〈 삭제 〉</p>

현행	개정안
<p><u>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 과장이 된다.</u></p> <p><u>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u>1. 학교 밖 청소년 종합지원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u> <u>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에 대한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u> <u>3. 학교 밖 청소년 유관기관 네트워크 및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u> <u>4. 학교 밖 청소년 인권침해 및 차별 사례에 대한 관계기관 진정 및 개선 요구에 관한 사항</u> <u>5. 순천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및 발전 방안</u> <u>6. 후견인제 등 사회적 지원 방안</u> <u>7.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u> <p><u>제8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u></p> <p><u>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u></p> <p><u>③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상·하반기 각 1회 개최한다.</u></p>	<p>< 삭제 ></p> <p>< 삭제 ></p> <p>< 삭제 ></p>

현행	개정안
<p>④ <u>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u></p> <p>⑤ <u>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u></p> <p>⑥ <u>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과 민간단체의 전문가 등을 출석시켜 의견청취, 자료제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u></p> <p>제9조(위원회의 임기) ① <u>당연직 위원</u>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p> <p>② <u>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u>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p> <p>③ <u>의회 의원</u> 위원의 임기는 위촉 당시에 상임위원회의 재임기간으로 한다.</p> <p>제10조(위원회의 수당) <u>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순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u></p>	<p style="text-align: center;">< 삭제 ></p> <p>제7조(위원회의 수당) <u>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순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u></p>

현행	개정안
<p><u>제11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u>1. 위원이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u> <u>2.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켜 부적절하다고 인정된 때</u> <u>3.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한 때</u> <u>4.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된 때</u> 	<p style="text-align: center;">〈 삭제 〉</p>
<p><u>제12조(학교 밖 청소년 종합지원계획의 수립)</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생략)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원 대상과 규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 5. (생략) 6.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생략) 	<p><u>제8조(학교 밖 청소년 종합지원계획의 수립)</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현행과 같음)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원 대상과 규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 5. (현행과 같음) 6. 학교 밖 청소년 전용 자치공간 확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p><u>제13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기관 지원 및 교육프로그램 지원신청)</u></p> <p>① <u>학교 밖 청소년지원기관으로 지원받으려는 자는 시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대안교육기관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목적</u> 2. <u>명칭</u> 3. <u>주소 및 위치</u> 4. <u>개관연월일</u> 5. <u>교육여건</u>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u>시설현황</u> 나. <u>직원현황</u> 다. <u>교사의 배치도 및 평면도</u> 6. <u>자산의 총액</u> 7. <u>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과정 운영계획서</u> <p>② <u>학교 밖 청소년 교육프로그램을 지원하고자 하는 법인이나 단체는 시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지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목적</u> 2. <u>프로그램명</u> 3. <u>대상자</u> 4. <u>운영계획</u> 5. <u>주관기관현황</u> 6. <u>예산액</u> 	<p><u>제9조(학교 밖 청소년 교육프로그램 지원)</u></p> <p>① <u>시장은 청소년 육성단체 또는 대안교육기관 등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을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u></p> <p>② <u>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을 하기 위한 세부기준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장이 따로 정한다.</u></p>

현행	개정안
<p>③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안교육기관 및 학교 밖 청소년 교육프로그램의 지원 대상 및 지원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정한다.</p>	<p>③ 시장은 제1항의 지원금을 교부받은 기관, 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그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서 제3호의 경우에는 시장의 사전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지원금을 교부받은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2. 해당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경우 3. 해당 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다른 기관·단체의 유사사업과 중복 지원을 받는 경우 5. 그 밖에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허위 사실이나 중대한 잘못이 있는 경우
<p>제14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설치 등) ① ~ ② (생략) 1. ~ 8. (생략) 9. <u>학교 밖 청소년 지원기관</u>에 대한 지원 10. ~ 12. (생략) ③ ~ ④ (생략)</p>	<p>제10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설치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1. ~ 8. (현행과 같음) 9. <u>대안교육기관</u> ----- 10. ~ 12. (현행과 같음) ③ ~ ④ (현행과 같음)</p>

현행	개정안
제15조(지원센터의 위탁)	제11조 (지원센터의 위탁)
제16조(지원센터의 지도·점검)	제12조 (지원센터의 지도·점검)
제17조(후견인제도 운영) ① ~ ② (생략)	제13조 (후견인제도 운영) ① ~ ② (현행과 같음)
제18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제14조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제19조(준용)	제15조 (준용)
제20조(시행규칙)	제16조 (시행규칙)

순천시 상징물 관리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3139호
----------	--------

- 제출자 : 순천시장
- 제출일시 : 2020. 3. 17.

1. 제안이유

- 순천시 상징물(브랜드슬로건, 마스코트) 신규 개발에 따른 본격 활용 전 관련 조례 정비를 통한 체계적 관리·운영 도모

2. 주요내용

- 제3조(상징물의 종류·의미) 별표 개정
 - 상징물 신규 개발에 따른 [별표 2] 마스코트, [별표 3] 브랜드슬로건 개정
- 제7조(상징물의 관리 등) 조문 수정
 - (현행) 브랜드 기본편람 및 응용편람 → (개정) 브랜드 및 마스코트 사용지침

3. 개정안 : 별첨

4. 관련법령 : 해당 없음

5. 관련부서 의견 : 해당 없음

6. 예산사항 : 해당 없음

7. 사전예고 결과

- 입법예고(2020. 1. 31. ~ 2. 20.)결과 : 의견 제출 없음

8. 사전협의(승인)사항

- 예산부서 심의필 : 해당 없음
- 규제개혁 심의필 : 해당 없음
- 법제부서 심의필 : 2020. 1. 23.(기획예산실-1084호)
- 법제부서 공고필 : 2020. 1. 31.(순천시 공고 제2020-183호)
- 성별영향분석평가 : 2020. 1. 23.(여성가족과-1742호)

순천시 상징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 상징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브랜드 기본편람 및 응용편람”을 “브랜드 및 마스코트 사용지침”으로 한다.

별표 2 및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2]

마스코트 모양과 의미

1. 모양



2. 의미

순천시의 마스코트로 순천시의 시조이자 천연기념물 제228호인 “흑두루미”와 세계 5대 연안습지에 속하면서 천혜의 생태자원인 순천만습지의 “짱똥어”를 캐릭터로 표현하여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생태도시의 이미지를 담고자 했으며, 마스코트의 이름은 “루미와 똥이”이다.

3. 색상



[별표 3]

브랜드슬로건 모양과 의미

1. 모양



2. 의미

순천시의 새로운 브랜드슬로건은 시의 이미지를 대내·외에 표출하는 모든 시각 커뮤니케이션의 핵심이 되는 대표 상징물이다. 순천시의 브랜드 슬로건 ‘人(in) Suncheon’은 사람 인(人)을 활용하여 시민과 함께하는 시민 중심 도시임을 붓터치로 표현했다.

특히 영문 in은 미국, 유럽 등 비한자권 국가들의 이해를 도와 전 세계적으로 소통하기 위한 목적으로 삽입되었으며, sun과 on의 빨간색은 태양이 떠오르는 듯한 강렬한 인상을 시각적으로 나타냈다.

슬로건 人(in) 앞에는 순천시 및 시민들이 담고 싶어 하는 여러 가지 의미를 자유롭게 담아서 표현이 가능하다.

3. 색상



Main Color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7조(상징물의 관리 등) ① (생략) ② 상징물을 사용할 때에는 순천시 이미지 표준화 규정집 및 <u>브랜드 기본편람 및 응용편람</u> 등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p> <p>[별표 2] 마스코트 모양과 의미</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10px; text-align: center;">  <p>순천시의 마스코트로 “학동이”를 남·여로 표현하였다.</p> <p>이는 순천시의 문화와 전통을 계승 발전시키려는 의지와 순천시가 교육의 고장임을 상징하는 것이며, 공부하는 모습으로 순천시의 무한한 잠재력을 바탕으로 21세기 지식기반 사회를 이끌어가는 예의바른 미래의 주인공인 우리의 소년 소녀들의 모습이다.</p> </div>	<p>제7조(상징물의 관리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u>브랜드 및 마스코트</u> <u>사용지침</u> -----.</p> <p>[별표 2] 마스코트 모양과 의미</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10px;"> <p>1. 모양</p> <div style="text-align: center;">  </div> <p>2. 의미</p> <p>순천시의 마스코트로 순천시의 시조이자 천연기념물 제228호인 “흑두루미”와 세계 5대 연안습지에 속하면서 천혜의 생태자원인 순천만 습지의 “짹둥어”를 캐릭터로 표현하여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생태도시의 이미지를 담고자 했으며, 마스코트의 이름은 “루미와 뚱이”이다.</p> <p>3. 색상</p>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align-items: flex-end;"> <div style="text-align: center;">  <p>PANTONE Black C</p> <p><small>CMYK : C0 M0 Y0 K100 RGB : R35 G31 B32</small></p>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p>PANTONE 7672 C</p> <p><small>CMYK : C75 M70 Y0 K30 RGB : R70 G58 B125</small></p>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p>PANTONE 1225 C</p> <p><small>CMYK : C0 M10 Y100 K0 RGB : R255 G205 B3</small></p> </div> </div> </div>

현 행

개 정 안

[별표 3]

브랜드슬로건 모양과 의미



순천시의 새로운 브랜드슬로건은 시의 이미지를 대내외에 표출하는 모든 시각커뮤니케이션의 핵심이 되는 대표적 상징물이다.

순천시의 브랜드 슬로건인 ‘Aha!’는 감탄과 기쁨을 표현하는 감탄사로 동북아권 중심도시로 성장해 나갈 순천시의 비전과 각오를 청각적으로 제시한다.

또한 브랜드슬로건의 부드러운 붓터치는 자연과 아우러진 아름다운 순천을 나타내며, 대각선 구도를 통해 순천의 역동적이고 발전적인 미래상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후미에 붙여진 느낌표는 구호를 외칠 때의 힘과 시각적 임팩트를 부여해 준다. 브랜드슬로건에 사용된 다양한 컬러는 볼거리와 즐길 거리가 다양한 도시 순천을 의미한다. 청색은 순천만의 푸르름과 신뢰감 있는 미래지향 도시 순천을 나타내고, 적색은 순천



[별표 3]

브랜드슬로건 모양과 의미

1. 모양



2. 의미

순천시의 새로운 브랜드슬로건은 시의 이미지를 대내·외에 표출하는 모든 시각커뮤니케이션의 핵심이 되는 대표 상징물이다.

순천시의 브랜드 슬로건 ‘인(in) Suncheon’은 사람 인(人)을 활용하여 시민과 함께하는 시민 중심 도시임을 붓터치로 표현했다.

특히 영문 in은 미국, 유럽 등 비한자권 국가들의 이해를 도와 전 세계적으로 소통하기 위한 목적으로 삽입되었으며, sun과 on의 빨간색은 태양이 떠오르는 듯한 강렬한 인상을 시각적으로 나타냈다.

슬로건 인(in) 앞에는 순천시 및 시민들이 담고 싶어 하는 여러 가지 의미를 자유롭게 담아서 표현이 가능하다.

현 행

시민의 열정과 역동적 도시 순천을 반영한다. 녹색은 맑고 깨끗한 자연환경을 가진 도시 순천을 표현하며, 황색은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간직한 도시 순천을 상징한다.

BASIC SYSTEM / 그리드 시스템 Grid Syste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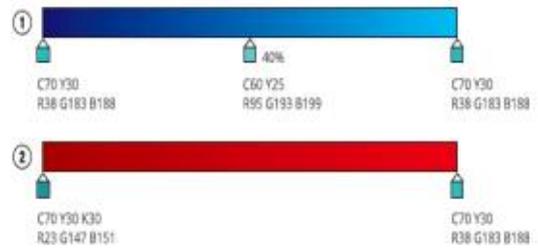
그리드 시스템은 빌보드나 대형사인 제작 시 사용한다. 브랜드 슬로건의 변형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본 항의 규정에 따라 정비례로 확대, 축소에 사용하도록 한다.



개정안

3. 색상

Gradient



Main Color



순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3140호
----------	--------

- 제출자 : 순천시장
- 제출일시 : 2020. 3. 17.

1. 제안이유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 제30311호) 개정에 따라 저출산 극복을 위한 출산·육아 부담 완화 등 가정친화 문화를 확산시킬 수 있도록 공무원의 복무 제도를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유·사산휴가 일수 및 대상 확대(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 ④,⑤)
 - (여성공무원) 임신 초기 유·사산 휴가 부여일수를 확대
 - (남성공무원) 3일의 배우자 유·사산 휴가 부여(신설)
- 임신검진휴가 신설(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 ⑩,⑪)
 - 임신한 공무원이 임신기간 중 검진 필요시기에 따라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총 10일의 휴가 부여
- 자녀돌봄휴가 다자녀 기준 완화(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 ⑨)
 - 자녀돌봄휴가 가산을 위한 다자녀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
- 연가 가산 제도 개선(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
 - 교육 훈련을 위한 파견 기간 등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이 있는 경우 연가 가산 대상에서 제외(신설)

3. 개정안 : 별첨

4. 관련법령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

5. 관련부서 의견 : 의견 제출자 없음

6. 예산상황 : 해당 없음

7. 사전예고 결과

○ 입법예고(2020. 1. 31. ~ 2020. 2. 20) 결과 : 의견 제출자 없음

8. 사전협의(승인) 사항

○ 성별영향분석평가 심의필 : 2020. 2. 10.(여성가족과-2890호)

○ 예산부서 심의필 : 해당 없음

○ 규제개혁 심의필 : 해당 없음

○ 법제부서 심의필 : 2020. 1. 31.(기획예산실-1430호)

○ 법제부서 공고필 : 2020. 1. 31.(순천시 공고 제2020-203호)

순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3항 중 “결근·휴직·정직·강등 및 직위해제 사실이” 를 “결근·휴직·정직·강등 및 직위해제 사실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2 제3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간이 ” 로 한다.

제23조제3항을 “여성공무원은 임신기간 중 검진을 위해 10일의 범위에서 임신검진휴가를 받을 수 있다.” 로 한다.

제23조제8항 중 “임신 중인 공무원이” 를 “임신 중인 공무원 또는 남성공무원의 배우자가” 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로 하고 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삭제한다.

제23조제14항 중 “3명” 을 “2명” 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8조(연가일수) ① ~ ② (생략)</p> <p>③ 해당 연도에 <u>결근·휴직·정직·강등 및 직위해제 사실이</u> 없는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 해에 한정하여 제1항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 1일을 더한다.</p> <p>1. ~ 2. (생략)</p> <p>④ (생략)</p>	<p>제18조(연가일수) ① ~ ② (현행과 같음)</p> <p>③ ----- <u>결근·휴직·정직·강등 및 직위해제 사실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2제3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간이</u> ----- ----- -----.</p> <p>1. ~ 2. (현행과 같음)</p> <p>④ (현행과 같음)</p>
<p>제23조(특별휴가) ① ~ ② (생략)</p> <p>③ <u>여자공무원은 매생리기와 임신한 경우의 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받을 수 있다.</u></p> <p>④ ~ ⑦ (생략)</p> <p>⑧ <u>임신 중인 공무원이</u> 유산(「모자보건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외의 인공임신중절에 의한 유산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또는 사산한 경우에 그 공무원이 신청하면 <u>다음 각 호의 기준</u>에 따라 유산휴가 또는 사산휴가를 주어야 한다.</p>	<p>제23조(특별휴가) ① ~ ② (현행과 같음)</p> <p>③ <u>여성공무원은 임신기간 중 검진을 위해 10일의 범위에서 임신 검진휴가를 받을 수 있다.</u></p> <p>④ ~ ⑦ (현행과 같음)</p> <p>⑧ <u>임신 중인 공무원 또는 남성공무원의 배우자가</u> ----- ----- ----- ----- ----- <u>「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제4항 및 제5항</u>----- -----.</p>

순천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3141호
----------	--------

- 제출자 : 순천시장
- 제출일시 : 2020. 3. 17.

1. 제안이유

- 시의 사무 중 농지원부 작성·발급 업무 등을 동장에게 위임하여 민원 업무 처리의 대민 행정서비스 향상 및 업무의 효율성 제고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대상사무 : 농지원부의 작성과 발급, 자경증명 발급
- 근거법규 : 「지방자치법」 제104조, 「농지법」 제49조 및 제50조
- 위임내용

부서명	대 상 사 무	근거 및 적용법률	수임기관
허가 민원과	• 농지원부의 작성과 발급	「지방자치법」 제104조, 「농지법」 제49조 및 제50조	동장
	• 자경증명 발급	「지방자치법」 제104조, 「농지법」 제50조	동장

※ 「농지법」 제49조 및 제50조에 따라 읍·면지역은 읍·면장 처리 사무임

3. 개정안 : 별첨

4. 관련법령 : 지방자치법 제104조, 농지법 제49조 및 제50조

5. 관련부서 의견 : 해당 없음

6. 예산상황 : 해당 없음

7. 사전예고 결과

- 입법예고(2020. 2. 17. ~ 2. 24.)결과 : 의견 제출자 없음

8. 사전협의(승인)사항

- 성별영향분석평가 : 2020. 2. 17.(여성가족과-3419호)
- 예산부서 심의필 : 해당 없음
- 규제개혁 심의필 : 해당 없음
- 법제부서 심의필 : 2020. 2. 17.(기획예산실-2356호)
- 법제부서 공고필 : 2020. 2. 17.(순천시 공고 제2020-343호)

순천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 허가민원과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과소별	위임사무명	근거 및 적용법률	수임기관
허가 민원과	1. 인감증명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8조의2	읍·면·동장
	2. 농지원부의 작성과 발급	지방자치법 제104조, 농지법 제49조 및 제50조	동장
	3. 자경증명 발급	지방자치법 제104조, 농지법 제50조	동장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2] 시의 사무 중 읍면동 위임 사무				[별표 2] 시의 사무 중 읍면동 위임 사무			
과소별	위임사무명	근거 및 적용법률	수임기관	과소별	위임사무명	근거 및 적용법률	수임기관
허가 민원과	1. 인감증명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8조의2	읍·면·동장	허가 민원과	1. 인감증명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8조의2	읍·면·동장
					2. 농지원부의 작성과 발급	지방자치법 제104조, 농지법 제49조 및 제50조	동장
					3. 자경증명 발급	지방자치법 제104조, 농지법 제50조	동장

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3142호
----------	--------

- 제출자 : 순천시장
- 제출일시 : 2020. 3. 17.

1. 제안이유

- 2020년 기준인건비 산정결과, 행정안전부로부터 승인된 인력을 정원에 반영
 - (사회복지) 읍면동 복지·방문간호·폴뿌리 주민자치 기반 조성
 - (생활안전 등) 지역현안해결·주민서비스 제고 등 국정과제 수행 인력

2. 주요내용

- (총 정원) 1,480명 → 1,529명 / * 49명 증 (단위 : 명)

구분	현행	개정	증감 내역			비고
			계	증원	감원	
총계	1,480	1,529	49	49	0	
정무직	1	1	-	-	-	
일반직	1,442	1,491	49	49	-	6급 이하 49
별정직	1	1	-	-	-	
연구직	7	7	-	-	-	
지도직	29	29	-	-	-	

3. 개정안 : 별첨

4. 관련법령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5. 관련부서 의견 : 해당 없음

6. 예산상황 : 비용추계서 첨부

7. 사전예고 결과

○ 입법예고(2020. 2. 17. ~ 2. 24.)결과 : 의견 제출자 없음

8. 사전협의(승인)사항

○ 성별영향분석평가 : 2020. 2. 17.(여성가족과-3420호)

○ 예산부서 심의필 : 해당 없음

○ 규제개혁 심의필 : 해당 없음

○ 법제부서 심의필 : 2020. 2. 17.(기획예산실-2356호)

○ 법제부서 공고필 : 2020. 2. 17.(순천시 공고 제2020-341호)

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1,480명” 을 “1,529명” 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1,455명” 을 “1,504명” 으로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3]

순천시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표

(단위 : 명)

기관별 직급별	총계	본청	의회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
총 계	1,529	1,529				
정무직 계	1	1				
시 장	1	1				
일반직 계	1,491	1,491				
3급	1	1				
4급	11	5	1	2	3	
5급	77	31	3	7	12	24
6급이하 계	1,402	1,402				
별정직 계	1	1				
6급상당이하 계	1	1				
연구직 계	7	7				
연구관	1				1	
연구사	6	6				
지도직 계	29	29				
지도관	2			2		
지도사	27	27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원의 총수) 순천시(이하 “시” 라 한다)에 두는 정원의 총수는 1,480명으로 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p> <p>1. 집행기관의 정원 : 1,455명</p> <p>2. (생략)</p> <p>[별표 3] 순천시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표 (단위 : 명)</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th style="text-align: left;">기관별 직급별</th> <th>총계</th> <th>본청</th> <th>의회</th> <th>직속 기관</th> <th>사업소</th> <th>읍·면·동</th> </tr> </thead> <tbody> <tr> <td>총 계</td> <td>1,480</td> <td colspan="5">1,480</td> </tr> <tr> <td>정무직 계</td> <td>1</td> <td colspan="5">1</td> </tr> <tr> <td>시 장</td> <td>1</td> <td>1</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일반직 계</td> <td>1,442</td> <td colspan="5">1,442</td> </tr> <tr> <td>3급</td> <td>1</td> <td>1</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4급</td> <td>11</td> <td>5</td> <td>1</td> <td>2</td> <td>3</td> <td></td> </tr> <tr> <td>5급</td> <td>77</td> <td>31</td> <td>3</td> <td>7</td> <td>12</td> <td>24</td> </tr> <tr> <td>6급 이하 계</td> <td>1,353</td> <td colspan="5">1,353</td> </tr> <tr> <td>별정직 계</td> <td>1</td> <td colspan="5">1</td> </tr> <tr> <td>6급 상당 이하 계</td> <td>1</td> <td>1</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연구직 계</td> <td>7</td> <td colspan="5">7</td> </tr> <tr> <td>연구관</td> <td>1</td> <td></td> <td></td> <td></td> <td>1</td> <td></td> </tr> <tr> <td>연구사</td> <td>6</td> <td colspan="5">6</td> </tr> <tr> <td>지도직 계</td> <td>29</td> <td colspan="5">29</td> </tr> <tr> <td>지도관</td> <td>2</td> <td></td> <td></td> <td>2</td> <td></td> <td></td> </tr> <tr> <td>지도사</td> <td>27</td> <td colspan="5">27</td> </tr> </tbody> </table>	기관별 직급별	총계	본청	의회	직속 기관	사업소	읍·면·동	총 계	1,480	1,480					정무직 계	1	1					시 장	1	1					일반직 계	1,442	1,442					3급	1	1					4급	11	5	1	2	3		5급	77	31	3	7	12	24	6급 이하 계	1,353	1,353					별정직 계	1	1					6급 상당 이하 계	1	1					연구직 계	7	7					연구관	1				1		연구사	6	6					지도직 계	29	29					지도관	2			2			지도사	27	27					<p>제2조(정원의 총수) ----- ----- 1,529명----- -----.</p> <p>1. 집행기관의 정원 : 1,504명</p> <p>2. (현행과 같음)</p> <p>[별표 3] 순천시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표 (단위 : 명)</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th style="text-align: left;">기관별 직급별</th> <th>총계</th> <th>본청</th> <th>의회</th> <th>직속 기관</th> <th>사업소</th> <th>읍·면·동</th> </tr> </thead> <tbody> <tr> <td>총 계</td> <td>1,529</td> <td colspan="5">1,529</td> </tr> <tr> <td>정무직 계</td> <td>1</td> <td colspan="5">1</td> </tr> <tr> <td>시 장</td> <td>1</td> <td>1</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일반직 계</td> <td>1,491</td> <td colspan="5">1,491</td> </tr> <tr> <td>3급</td> <td>1</td> <td>1</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4급</td> <td>11</td> <td>5</td> <td>1</td> <td>2</td> <td>3</td> <td></td> </tr> <tr> <td>5급</td> <td>77</td> <td>31</td> <td>3</td> <td>7</td> <td>12</td> <td>24</td> </tr> <tr> <td>6급 이하 계</td> <td>1,402</td> <td colspan="5">1,402</td> </tr> <tr> <td>별정직 계</td> <td>1</td> <td colspan="5">1</td> </tr> <tr> <td>6급 상당 이하 계</td> <td>1</td> <td>1</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연구직 계</td> <td>7</td> <td colspan="5">7</td> </tr> <tr> <td>연구관</td> <td>1</td> <td></td> <td></td> <td></td> <td>1</td> <td></td> </tr> <tr> <td>연구사</td> <td>6</td> <td colspan="5">6</td> </tr> <tr> <td>지도직 계</td> <td>29</td> <td colspan="5">29</td> </tr> <tr> <td>지도관</td> <td>2</td> <td></td> <td></td> <td>2</td> <td></td> <td></td> </tr> <tr> <td>지도사</td> <td>27</td> <td colspan="5">27</td> </tr> </tbody> </table>	기관별 직급별	총계	본청	의회	직속 기관	사업소	읍·면·동	총 계	1,529	1,529					정무직 계	1	1					시 장	1	1					일반직 계	1,491	1,491					3급	1	1					4급	11	5	1	2	3		5급	77	31	3	7	12	24	6급 이하 계	1,402	1,402					별정직 계	1	1					6급 상당 이하 계	1	1					연구직 계	7	7					연구관	1				1		연구사	6	6					지도직 계	29	29					지도관	2			2			지도사	27	27				
기관별 직급별	총계	본청	의회	직속 기관	사업소	읍·면·동																																																																																																																																																																																																																																									
총 계	1,480	1,480																																																																																																																																																																																																																																													
정무직 계	1	1																																																																																																																																																																																																																																													
시 장	1	1																																																																																																																																																																																																																																													
일반직 계	1,442	1,442																																																																																																																																																																																																																																													
3급	1	1																																																																																																																																																																																																																																													
4급	11	5	1	2	3																																																																																																																																																																																																																																										
5급	77	31	3	7	12	24																																																																																																																																																																																																																																									
6급 이하 계	1,353	1,353																																																																																																																																																																																																																																													
별정직 계	1	1																																																																																																																																																																																																																																													
6급 상당 이하 계	1	1																																																																																																																																																																																																																																													
연구직 계	7	7																																																																																																																																																																																																																																													
연구관	1				1																																																																																																																																																																																																																																										
연구사	6	6																																																																																																																																																																																																																																													
지도직 계	29	29																																																																																																																																																																																																																																													
지도관	2			2																																																																																																																																																																																																																																											
지도사	27	27																																																																																																																																																																																																																																													
기관별 직급별	총계	본청	의회	직속 기관	사업소	읍·면·동																																																																																																																																																																																																																																									
총 계	1,529	1,529																																																																																																																																																																																																																																													
정무직 계	1	1																																																																																																																																																																																																																																													
시 장	1	1																																																																																																																																																																																																																																													
일반직 계	1,491	1,491																																																																																																																																																																																																																																													
3급	1	1																																																																																																																																																																																																																																													
4급	11	5	1	2	3																																																																																																																																																																																																																																										
5급	77	31	3	7	12	24																																																																																																																																																																																																																																									
6급 이하 계	1,402	1,402																																																																																																																																																																																																																																													
별정직 계	1	1																																																																																																																																																																																																																																													
6급 상당 이하 계	1	1																																																																																																																																																																																																																																													
연구직 계	7	7																																																																																																																																																																																																																																													
연구관	1				1																																																																																																																																																																																																																																										
연구사	6	6																																																																																																																																																																																																																																													
지도직 계	29	29																																																																																																																																																																																																																																													
지도관	2			2																																																																																																																																																																																																																																											
지도사	27	27																																																																																																																																																																																																																																													

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1. 기구 및 정원의 변동 내역

○ 기구 : 변동없음

○ 정원 증감내역

(단위 : 명)

합 계	일반직			비 고
	4급	5급	6급 이하	
49	-	-	49	

2. 비용 소요내역

○ 소요비용 증감내역

(단위 : 원)

구 분	1인당 소요비용		증감인원	총 액	비고
일반직	6급	79,413,220	평균 49명	2,740,480,820	26호봉
	7급	64,496,540			17호봉
	8급	44,605,220			7호봉
	9급	35,197,750			4호봉

○ 직급별 단가내역

(단위 : 원)

구분	6급 (26호봉)	7급 (17호봉)	8급 (7호봉)	9급 (4호봉)	비고
총계(①+②+③)	79,413,220	64,496,540	44,605,220	35,197,750	
①인건비(A+B)	65,154,930	52,331,760	35,390,100	27,698,630	
·기본급(A)	49,797,600	39,530,400	26,505,600	21,069,600	
·수당(B)	15,357,330	12,801,360	8,884,500	6,629,030	
-정액급식비	1,560,000	1,560,000	1,560,000	1,560,000	
-명절휴가비	4,979,760	3,953,040	2,650,560	2,106,960	
-연가보상비	1,427,530	1,133,200	759,820	603,990	
-정근수당	4,149,800	3,294,200	1,546,160	702,320	
-정근수당가산금	1,200,000	960,000	600,000		
-시간외수당(정액분)	1,440,240	1,300,920	1,167,960	1,055,760	
-기타수당(대민활동비)	600,000	600,000	600,000	600,000	
②직급보조비	1,980,000	1,860,000	1,740,000	1,740,000	
③이전경비	12,278,290	10,304,780	7,475,120	5,759,120	
-성과상여금	3,957,250	3,364,460	2,794,880	2,376,440	
-연금부담금	5,986,680	5,023,440	3,393,840	2,602,920	
-국민건강보험금	2,117,400	1,738,680	1,166,880	707,280	
-장기요양보험금	216,960	178,200	119,520	72,480	

3. 협의사항 : 해당없음

4. 부대의견 : 해당없음

5. 작 성 자 : 자치행정국 총무과장

채금목(☎ 749-5457)

총무과 인사팀장

김영남(☎ 749-5632)

순천시민의 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3143호
----------	--------

- 제출자 : 순천시장
- 제출일시 : 2020. 3. 17.

1. 제안이유

- 시민의 상 수상 대상자 자격기준 변별력이 부족하고 사망한 사람을 수상자로 선정 할 수 있어 현존하는 시민에게 시민의 상 수여 기회가 부족한 실정임
- 시민의 날 행사추진위원회에서 생존자와 사망자를 구분하여 사망자에게 특별상을 수여하도록 하고,
- 수상 대상자 추천권자도 기관단체장, 읍면동장, 시민의 날 행사추진위원회에서 시민사회단체로 확대 운영하여 추천권자 범위를 확대 권고함에 따라 이를 수용하여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이미 사망한 사람은 공적에 따라 특별상 수여
- 수상대상자 추천권자를 시민사회단체까지 확대 운영
 - ⇒ (현행) 각급 기관단체장 또는 읍면동장, 시민의 날 행사 추진위원회
 - ⇒ (개정) 각급 기관단체장 또는 읍면동장, 시민사회단체, 시민의 날 행사 추진위원회

3. 개정조례안 : 별첨

4. 관련법령 : 해당 없음

5. 관련부서 의견 : 해당 없음

6. 예산상황 : 해당 없음

7. 사전예고 결과

○ 입법예고(2020. 2. 17. ~ 2019. 3. 8.)결과 : 의견제출자 없음

8. 사전협의(승인)사항

○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 없음

○ 예산부서 심의필 : 해당 없음

○ 규제개혁 심의필 : 해당 없음

○ 법제부서 심의필 : 2020. 2. 6(기획예산실-1740호)

○ 법제부서 공고필 : 2020. 2. 10.(순천시 공고 제2020 - 290호)

순천시민의 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민의 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않거나”를 “않아도”로 하고, “이미 사망한 사람에 대해서도 수상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를 “수상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으며, 이미 사망한 사람에 대해서는 특별상으로 수상할 수 있다”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각급 기관단체장 또는 읍·면·동장이”를 “각급 기관단체장 또는 읍·면·동장, 시민사회단체가”로 하고, “과반수 이상”을 “과반수”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4조(수상대상자 자격) ① (생략)</p> <p>② 제1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순천시 명예를 국내외 선양하여 시의 위상을 높인 자로서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순천시에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가 되어 있지 <u>않거나 이미 사망한 사람에 대해서도 수상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u></p>	<p>제4조(수상대상자 자격) ① (현행과 같음)</p> <p>②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u>않아도 수상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으며, 이미 사망한 사람에 대해서는 특별상으로 수상할 수 있다.</u></p>
<p>제5조(수상대상자 추천) ① <u>각급 기관단체장 또는 읍·면·동장이</u> 조례에 의한 수상 대상자를 추천할 수 있으며, 추천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기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순천시민의 날 행사에 관한 조례」에 따른 순천시민의 날 행사추진위원회에서 대상자를 추천 할 경우에는 위원 <u>과반수 이상</u>의 연명으로 한다.</p> <p>② (생략)</p>	<p>제5조(수상대상자 추천) ① <u>각급 기관단체장 또는 읍·면·동장, 시민사회단체가</u>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u>과반수</u> _____ _____.</p> <p>② (현행과 같음)</p>

순천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3144호
----------	--------

○ 제출자 : 순천시장

○ 제출일시 : 2020. 3. 17.

1. 제안이유

- 영세납세자에 대한 이의신청·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무료로 대리하는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가 「지방세기본법」에 신설되어 제도 운영에 관한 법령 위임사항을 조례에 정하기 위함
- 대리인 제도 운영을 위한 행정안전부 표준 조례안 시달

2. 주요내용

- 선정 대리인 신청자에 대한 소유재산 평가방법(제8조)
- 선정 대리인 신청·통지 등(제9조)
- 선정 대리인 의무 및 우대사항(제10조)
- 시행일 :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9조 개정규정의 적용일을 「지방세기본법」 부칙 〈제16854호, 2019. 12. 31〉 제10조(지방자치단체 선정대리에 관한 적용례)에 따라 적용

3. 개정조례안 : 별첨

4. 관련법령 : 「지방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5. 예산상황 : 해당 없음

6. 관련부서 의견 : 해당 없음

7. 사전예고 결과

- 입법예고(2020. 2. 17. ~ 3. 9.)결과 : 의견 제출 없음

○ 입법예고 후 변경된 행정안전부 표준조례 수정안 변경사항 반영

- 행정안전부 표준조례 수정안 변경 통보 (전라남도 세정과-1911, 2020.2.19.)

관련 조항	변경 사항	검토결과
제9조(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신청·통지 등) 제3항 및 제4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2조의2제5항에 따르면 시장·군수·구청장은 대리인을 선정할 때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가 위촉한 사람 중에서 “선정”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바, 당초 법령에서 정한 내용에 맞게 규정을 보완 → 선정근거 시행령 조문 삽입 등에 따른 변경 	<u>〈수용〉</u>
제10조(선정 대리인 의무·우대 등) 제3항 1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무사법 제12조(성실의무) 위반을 세무사법 제17조(징계) 처분으로 근거 법령 변경 	

《수용에 따른 수정안 신규조문대비표》

개정안	수정안
<p>제9조(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신청·통지 등) ③ 시장은 제2항의 신청서가 접수되면 법 제93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이 충족하는지 확인하고 모두 충족하는 경우 지체 없이 전라남도지사에게 선정 대리인 지정을 요청하여야 한다.</p> <p>④ 시장은 전라남도지사가 선정 대리인을 지정·통보하면 법 제93조의2제2항에 따른 선정 대리인 신청 결과를 규칙에서 정한 서식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p>	<p>제9조(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신청·통지 등) ③ 시장은 <u>제2항에 따른 신청이 법 제93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영 제62조의2제5항에 따라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u> 미리 위촉한 사람 중에서 선정 대리인을 선정하고 규칙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p> <p>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선정 대리인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p>
<p>제10조(선정 대리인의 의무·우대 등)</p> <p>③ 시장은 선정 대리인 활동이 우수한 사람에게 표창을 하거나 각종 위원회 위원 위촉 시 우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1. 「변호사법」 제90조 및 제91조에 의한 징계처분 또는 「세무사법」 제12조 위</p>	<p>제10조(선정 대리인의 의무·우대 등)</p> <p>③ 시장은 선정 대리인 활동이 우수한 사람에게 표창을 하거나 각종 위원회 위원 위촉 시 우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1. 「변호사법」 제90조 및 제91조에 의한 징계처분 또는 「세무사법」 <u>제17조에</u></p>

개정안	수정안
반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의한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8. 사전협의(승인)사항

- 성별영향분석평가 : 2020. 2. 10.(여성가족과-2857호)
- 예산부서 심의필 : 해당 없음
- 규제개혁 심의필 : 해당 없음
- 법제부서 심의필 : 2020. 2. 11.(기획예산실-1956호)
- 법제부서 공고필 : 2020. 2. 17.(순천시 공고 제2020-340호)

순천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를 제11조로 하고 제8조, 제9조,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소유 재산의 평가방법) 영 제62조의2제2항제2호 각 목의 소유 재산 평가는 「지방세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다.

제9조(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신청·통지 등) ① 시장은 대리인 없이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이하 ‘청구등’ 이라 한다)이 접수된 경우 그 청구등 세액이 1천만원 이하인 사건에 대하여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인 또는 이의신청인(이하 ‘청구인등’ 이라 한다)에게 법 제93조의2 및 영 제62조의2의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이하 ‘선정 대리인’ 이라 한다) 제도를 안내하여야 한다.

② 법 제93조의2 및 영 제62조의2제1항에 따라 선정 대리인을 신청하려는 자는 규칙에서 정하는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이 법 제93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영 제62조의2제5항에 따라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 라 한다)가 미리 위촉한 사람 중에서 선정 대리인을 선정하고 규칙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선정 대리인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선정 대리인이 지정된 경우 청구인등의 불복청구서 등 관련 서류를 지체 없이 선정 대리인에게 전달하고 권리구제에 필요한 사항을 협조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선정 대리인이 지정된 경우 청구 또는 신청일자·불복청구인·대리인 지정일자·결정내용 등을 규칙에 따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선정 대리인의 의무·우대 등) ① 선정 대리인은 임기가 종료하더라도 임기만료 전에 지정된 사건에 대한 대리 업무를 계속 수행하여야 한다.

② 선정 대리인은 불복대리 과정에서 알게 된 납세자에 관한 정보를 타

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③ 시장은 선정 대리인 활동이 우수한 사람에게 표창을 하거나 각종 위원회 위원 위촉 시 우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변호사법」 제90조 및 제91조에 의한 징계처분 또는 「세무사법」 제17조에 의한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2. 이해관계인으로부터 금품·향응을 제공받거나 청탁 또는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하는 등 그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부터 제2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④ 시장은 선정 대리인이 지식기부를 통해 불복업무를 대리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선정 대리인에게 실비변상적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9조 개정규정은 2020년 3월 2일 전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을 하고 2020년 3월 2일 이후 선정 대리인을 신청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신 설></p>	<p>제8조(소유 재산의 평가방법) 영 제62조의2제2항제2호 각 목의 소유재산 평가는 「지방세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다.</p>
<p><신 설></p>	<p>제9조(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신청·통지 등) ① 시장은 대리인 없이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이하 ‘청구등’ 이라 한다)이 접수된 경우 그 청구등 세액이 1천만원 이하인 사건에 대하여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인 또는 이의신청인(이하 ‘청구인등’ 이라 한다)에게 법 제93조의2 및 영 제62조의2의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이하 ‘선정 대리인’ 이라 한다) 제도를 안내하여야 한다.</p> <p>② 법 제93조의2 및 영 제62조의2제1항에 따라 선정 대리인을 신청하려는 자는 규칙에서 정하는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p> <p>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이 법 제93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영 제62조의2제5항에 따라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 라 한다)가 미리 위촉한 사람 중에서 선정 대리인을 선정하고 규칙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p> <p>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선정 대리인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p> <p>⑤ 시장은 선정 대리인이 지정된 경우</p>

<신 설>

청구인들의 불복청구서 등 관련 서류를 지체 없이 선정 대리인에게 전달하고 권리구제에 필요한 사항을 협조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선정 대리인이 지정된 경우 청구 또는 신청일자·불복청구인·대리인 지정일자·결정내용 등을 규칙에 따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선정 대리인의 의무·우대 등)

① 선정 대리인은 임기가 종료하더라도 임기만료 전에 지정된 사건에 대한 대리 업무를 계속 수행하여야 한다.

② 선정 대리인은 불복대리 과정에서 알게 된 납세자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③ 시장은 선정 대리인 활동이 우수한 사람에게 표창을 하거나 각종 위원회 위원 위촉 시 우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변호사법」 제90조 및 제91조에 의한 징계처분 또는 「세무사법」 제17조에 의한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2. 이해관계인으로부터 금품·향응을 제공받거나 청탁 또는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하는 등 그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부터 제2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④ 시장은 선정 대리인이 지식기부를 통해 불복업무를 대리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선정 대리인에게 실

<u>제8조</u> (시행규칙) (생략)	<u>비변상적</u>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u>제11조</u> (시행규칙) (현행 제8조와 같음)
------------------------	--

순천시사편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복남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제3167호
----------	--------

- 제안연월일 : 2020. 3. 17.
- 제안자 : 이복남 의원
문규준 의원

1. 개정이유

- 시사편찬 위원회 내 소위원회 설치 및 예산지원 조항 신설로 시사편찬 업무의 능률적 처리를 위함

2. 주요내용

- 보조원의 명칭 및 인원수 변경(제6조)
 - 명칭변경 (보조원 → 연구원)
 - 인원수 변경 (1인 → 2인 이내)
- 소위원회 조항 신설(제8조)
 - 시사편찬 위원회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함
- 보조원의 명칭 변경(제11조)
 - 보조원 → 연구원
- 예산지원 조항 신설(제12조)
 - 위원회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 지원

3. 개정조례안 : 별첨

4.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해당없음

나. 예산조치 : 예산의 범위에서 수립·시행하는 지원계획에 따른 재정 수반

순천시사편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사편찬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조명을 “연구원” 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보조원 1인” 을 “2인 이내의 연구원” 으로, 같은 조 제2항 “보조원” 을 “연구원” 으로 한다.

제8조부터 제10조까지를 제9조에서 제11조까지로, 제11조와 제12조를 제13조와 제14조로 하고, 제11조제1항(종전의 제10조제1항) 중 “보조원” 을 “연구원” 으로 하며, 제8조와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소위원회) ① 시사편찬 업무를 능률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임사항을 처리한다.

③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제12조(예산지원) 시장은 위원회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6조(보조원) ① 위원회의 필요에 따라 <u>보조원 1인</u>을 둘 수 있다.</p> <p>② <u>보조원</u>은 상임위원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한다.</p> <p><신 설></p> <p><u>제8조~제9조</u>(생략)</p> <p><u>제10조</u>(실비변상) ① 상임위원에게는 지방공무원 4급 1호봉, 소속직원이 아닌 <u>보조원</u>에게는 지방공무원 6급 1호봉과 동 직급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p> <p>② (생략)</p> <p><신 설></p> <p><u>제11조 ~ 제12조</u>(생략)</p>	<p>제6조(연구원) ① ----- -- <u>2인 이내의 연구원</u>-----.</p> <p>② <u>연구원</u>----- -----.</p> <p><u>제8조(소위원회) ① 시사편찬 업무를 능률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u></p> <p><u>②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임사항을 처리한다.</u></p> <p><u>③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u></p> <p><u>제9조~제10조</u> (현행 제8조부터 제9조까지와 같음)</p> <p><u>제11조</u>(실비변상) ① ----- ----- ----- <u>연구원</u> ----- ----- -----.</p> <p>② 현행과 같음.</p> <p><u>제12조(예산지원) 시장은 위원회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u></p> <p><u>제13조~제14조</u> (현행 제11조부터 제12조까지와 같음)</p>

순천시사편찬위원회 조례

[시행 2018. 10. 1.] [전라남도순천시조례 제1921호, 2018. 10. 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순천시사편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한 위원 25인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
③ 위원은 순천시 소속직원과 시사에 관한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시사편찬을 위하여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시사편찬 지침 및 운영방안
2. 자료의 수집 및 조사연구
3. 시사원고의 심사 및 수록사항 결정
4. 기타 시사편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4조(위원장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회무를 통할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상임위원) ① 시사편찬을 능률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위원중에서 상임위원 1인을 둔다.
② 상임위원은 시사편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제6조(보조원) ① 위원회에 필요에 따라 보조원 1인을 둘 수 있다.
② 보조원은 상임위원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한다.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에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문화예술과장이 되고 서기는 소관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1995. 03. 28., 1996. 01. 22., 1998. 09. 21., 1999. 08. 28., 2004. 02. 24., 2005. 01. 10., 2007. 01. 09., 2008. 07. 15., 2012. 08. 06., 2018. 10. 01.>

③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시사편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제9조(회의록) 위원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 보존하여야 한다.

제10조(실비변상) ① 상임위원에게는 지방공무원 4급 1호봉, 소속직원이 아닌 보조원에게는 지방공무원 6급 1호봉 상당액의 월수당과 동직급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소속직원이 아닌 비상임위원으로서 회의에 참석하거나 위원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를 수행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순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의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 09. 29.>

제11조(위원의 해촉) 위원회의 위원은 시사편찬이 종료됨과 동시에 해촉한다.

제12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순천시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박계수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제3168호
----------	--------

발의연월일 : 2020. 3. 17.

발의자 : 박계수 의원

장숙희 의원

이현재 의원

1. 제정이유

- 농산물에 대한 지역 연계 소비 강화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순천시 농산물의 이용촉진 및 농산물의 직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농업인이 소득증대와 소비자의 이익 보호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 제2조)
- 나. 시장의 책무 (안 제3조)
- 다.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안 제4조)
- 라.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직거래 활성화 지원 등 (안 제5조)
- 마. 우선구매 및 판매촉진 (안 제6조)
- 바. 지역농산물 품질개선 등 (안 제7조)
- 사. 상생협력사업 (안 제8조)
- 아. 직거래장터의 개설 및 운영 (안 제9조)
- 자. 지도감독 (안 제10조)

3. 제정조례안 : 별첨

4. 참고사항

- 가. 관련법령 : 해당없음
- 나. 예산조치 : 예산의 범위에서 수립·시행하는 지원계획에 따른 재정 수반
- 다. 타 지자체 입법사례 : 전국 29(광역시 7, 기초 22 / 전남 2 : 나주, 담양)

순천시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산물의 소비촉진과 농산물의 직거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농업발전,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을 통한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소비자의 이익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산물”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 가목의 농산물 과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으로 정하는 농산물가공품을 말한다.
2. “순천시 지역농산물”(이하 “지역농산물”이라 한다)이란 순천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생산·가공된 농산물로서 시에서 유통·판매되는 것을 말한다.
3. “농산물 직거래”란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접 거래하거나, 중간 유통단계를 한 번만 거쳐 거래하는 것으로서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정하는 행위를 말한다.
4. “농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의 농업인을 말한다.
5. “생산자”란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업인 등 영 제4조에 따른 자를 말한다.
6. “생산자단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를 말한다.
7. “농산물 직거래사업장”이란 농산물 직거래가 이루어지는 사업장으로서 농산물 직매장, 농산물 직거래 장터, 농산물 인터넷 쇼핑몰, 농산물 공동체 직거래장 등 영 제5조에 따른 사업장을 말한다.
8. “농산물 직거래사업자”란 농산물 직거래를 업(業)으로 하는 자로서 영 제6조에 따른 자를 말한다.
9. “지역농산물 취급사업자”란 지역농산물의 유통·가공을 업(業)으로 하는 자로서 영 제7조에 따른 자를 말한다.
10. “유관기관·단체”란 농산물의 생산과 유통·소비에 관계되는 공공기관·단체를 말한다.
11. “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순천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은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 ① 시장은 지역적 특성과 농업 상황에 맞는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

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
2.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현황과 이에 대한 평가
3.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방안
4. 그 밖에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농산물 이용 및 농산물 직거래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5조(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지원 등) 시장은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농산물 취급사업장 및 농산물 직거래사업장의 설치·개설·운영, 판로개척, 컨설팅, 안전성 검사
2. 농산물 직거래사업자 및 지역농산물 취급사업자의 육성을 위한 교육 및 훈련
3.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우수 사례 발굴·홍보 및 포상
4. 지역농산물의 전시 또는 시연을 위한 박람회 등의 행사 개최 및 참가 지원

제6조(농산물 우선구매 및 판매촉진) ① 시장은 농산물에 관한 조달계약 등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지역농산물을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역농산물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민간단체, 기업 등과 지역농산물의 구매촉진을 위한 협약을 맺을 수 있다.

③ 시장은 시 지역의 공공기관 또는 민간단체 등이 지역농산물의 판매촉진을 위한 직거래 장터, 홍보사업 등을 추진할 경우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지역농산물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의 대규모점포로서 영으로 정하는 할인점·백화점·쇼핑센터 및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의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로서 영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것을 경영하는 사업자에게 지역농산물 판매장소를 설치·운영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제2항에 따른 협약 체결과 관련하여 지역농산물의 전시 또는 시연을 위한 박람회 등의 행사를 개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⑥ 시장은 지역농산물 이용촉진을 위하여 시 지역 내의 학교급식, 단체급식 등 사업자, 영양사 등 교육 관계자, 그 밖의 식품 관련 사업자 등과 지역농산물 생산자와의 협력 강화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시책추진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지역농산물 품질개선) ① 시장은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지역농산물의 품질 향상 및 안정적 공급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의 기준에 따라 지역농산물의 품질 현황과 안전성을 조사·평가하여 그 결과를 소비자에게 알려줄 수 있다.

제8조(상생협력사업) ① 시장은 관내기업체와 생산자·생산자단체 및 농산물의 유통·서비스업체 상호간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상생협력사업을 실시하도록 장려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역농산물 판매활성화 및 지방자치단체 간 상생협력을 위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농산물 직거래사업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농산물 직거래 장터 개설·운영) ① 농산물 직거래 장터(이하 “직거래장터”라 한다)는 시장이 개설하여 직접 운영하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생산자단체 또는 공익적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에게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직거래장터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직거래장터 이용 농산물 판매 참여자 모집
2. 직거래장터의 이용 홍보
3. 직거래장터의 활성화를 위한 정보 수집 및 활용
4. 직거래장터 운영 및 유지 관리
5. 그 밖에 직거래장터 개설·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0조(지도 및 감독) 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수탁자에 대하여 직거래장터의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사무 및 수탁 운영하는 시설 등에 출입하여 그 밖의 물건 등을 확인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확인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순천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3145호
----------	--------

- 제출자 : 순천시장
- 제출일시 : 2020. 3. 17.

1. 제안이유

- 체육진흥 계획 수립 및 체육진흥에 필요한 사항 협의 및 자문을 위한 체육진흥협의회 구성 등 일부 조항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제7조(위원)제3항 일부 개정
 - 전문체육과 생활체육 통합에 따른 명칭 변경 등 위원 구성원 정비
- 제10조(회의)제2항 개정
 - 협의회 정기회 소집 횟수 정비 : 반기별로 1회 → 연1회
- 제18조(생활체육 진흥)제3항 신설
 - 생활체육 활성화와 시민건강 및 체력증진을 위해 건강강좌와 체력증진 프로그램 무료 운영

3. 개정조례안 : 별첨

4. 관련법령 : 「국민체육진흥법」 제17조제8항

5. 관련부서 의견 : 해당 없음

6. 예산상황 : 해당 없음

7. 사전예고 결과

- 입법예고(2020. 2.17. ~ 2020. 3. 9.) 결과 : 의견 제출자 없음

8. 사전협의(승인)사항

- 성별영향 분석평가 : 2020. 2. 07.(여성가족과-2752호)
- 예산부서 심의필 : 해당 없음
- 규제개혁 심의필 : 해당 없음
- 법제부서 심의필 : 2020. 2. 05.(기획예산실-1650호)
- 법제부서 공고필 : 2020. 2. 17.(순천시 공고 제2020-331호)

순천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다음의 각 호를 신설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대학의 체육관련학과 교수
2. 체육단체 및 체육관련 기관의 장 또는 관리자
3. 순천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2명
4. 사회단체·직능단체 등 각 분야를 대표하는 사람

제10조제2항 중 “반기별로 1회” 를 “연 1회” 로 한다.

제18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시장은 생활체육 활성화와 시민건강 및 체력증진을 위해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건강강좌와 체력증진프로그램을 무료로 운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7조(구성) ① ~ ② (생략)</p> <p>③ <u>위원은 순천시생활체육협의회장(순천시체육회장)과 대학의 체육담당교수 1인, 순천시체육회부회장 또는 사무국장 중 1인, 지역 내 공공기관·직장(기업체)·사회단체·직능단체·체육단체 등 각 분야를 대표하는 인사 중에서 지역사회 체육진흥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자를 시장이 위촉한다.</u></p> <p><u><신 설></u></p> <p><u><신 설></u></p> <p><u><신 설></u></p> <p><u><신 설></u></p>	<p>제7조(구성) ① ~ ② (현행과 같음)</p> <p>③ <u>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대학의 체육관련학과 교수</u> 2. <u>체육단체 및 체육관련 기관의 장 또는 관리자</u> 3. <u>순천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2명</u> 4. <u>사회단체·직능단체 등 각 분야를 대표 하는 사람</u>
<p>제10조(회의) ① (생략)</p> <p>② 정기회는 <u>반기별로 1회</u> 개최하고, 임시회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의장이 소집한다.</p> <p>③ ~ ④ (생략)</p>	<p>제10조(회의) ① (현행과 같음)</p> <p>② ----- <u>연 1회</u> -----</p> <p>-----</p> <p>-----.</p> <p>③ ~ ④ (현행과 같음)</p>
<p>제18조(생활체육의 진흥) ① ~ ② (생략)</p> <p><u><신 설></u></p>	<p>제18조(생활체육의 진흥)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u>시장은 생활체육 활성화와 시민건강 및 체력증진을 위해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건강강좌와 체력증진 프로그램을 무료로 운영할 수 있다.</u></p>

순천시 지하안전위원회 운영 조례안

의안 번호	제3146호
----------	--------

- 제출자 : 순천시장
- 제출일시 : 2020. 3. 17.

1. 제안이유

- 지하를 안전하게 개발하고 이용하기 위한 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함으로써 지반침해로 인한 위해를 방지
- 공공의 안전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제1조, 제2조)
-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제3조~제8조)

3. 제정조례안 : 별첨

4. 관련법령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5. 관련부서 의견 : 해당 없음

6. 예산상황 : 해당 없음

7. 사전예고 결과

- 입법예고(2020. 2. 17. ~ 2020. 3. 9.) 결과 : 의견 제출자 없음

8. 사전협의(승인) 사항

- 성별영향분석평가 : 2020. 2. 12.(여성가족과-3096호)
- 예산부서 심의필 : 해당 없음
- 규제개혁 심의필 : 해당 없음
- 법제부서 심의필 : 2020. 2. 11.(기획예산실-1984호)
- 법제부서 공고필 : 2020. 2. 17.(순천시 공고 제2020-326호)

순천시 지하안전위원회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순천시(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순천시 지하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1.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순천시 지하안전관리계획의 수립(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중점관리대상의 지정(변경을 포함한다)·고시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중점관리대상 지정의 해제·고시
3. 지하안전관리의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지하안전 기술 및 기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시장이 의뢰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이때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성별의 전문 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지하개발 및 지하시설물 관리와 관련된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
2. 지하개발 또는 지하시설물관리와 관련된 지질·환경·건설 산업 분야의 전문가(대학교수·기술사·건축사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
3. 그 밖에 지하개발 또는 지하시설물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 위원은 공정성과 형평성 등을 위하여 전문분야별 출신학교, 직업, 시민단체, 연령 등이 어느 한쪽에 편중되지 아니하도록 한다.

제4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해임 및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1.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6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요청하거나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장소,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⑥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한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위원회 사무를 주관하는 담당팀장이 되고 서기는 위원회 사무를 주관하는 담당직원이 된다.

제8조(수당)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순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순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3147호
----------	--------

- 제출자 : 순천시장
- 제출일시 : 2020. 3. 17.

1. 제안이유

- 건축물 녹화 실행력 강화로 시민참여 활성화와 ‘정원의 도시’ 완성과 미세먼지 저감 등 녹색복지 실현으로 생태수도 순천의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건축법에 따라 조경시설을 설치하는 건축물은 조경면적중 50%이상을 옥상(벽면)에 설치하되, 공용건축물은 옥상바닥면적의 30%이상 설치하여야 함
- 대상건축물
 - 공용건축물 : 연면적 100㎡ 이상인 건축물
 - 기타건축물 : 연면적 500㎡ 이상이면서 조경면적이 30㎡이상인 건축물

3. 개정안 : 별첨

4. 관련법령 :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5. 관련부서 의견 : 해당 없음

6. 예산상황 : 해당 없음

7. 사전예고 결과

- 입법예고(2019. 11. 29. ~ 12. 18.)결과 : 의견 제출자 없음

8. 사전협의(승인)사항

- 순천지역건축사협회 협의 : 2019. 11. 19.
- 성별영향분석평가 : 2019. 11. 29.(여성가족과-24538호)
- 법제부서 심의필 : 2019. 11. 29.(기획예산실-15799호)
- 법제부서 공고필 : 2019. 11. 29.(순천시 공고 제2019-2162호)
- 건축위원회 심의 완료 : 2019. 12. 20.(건축과-41953)
- 규제개혁 심의필 : 2020. 2. 24.(기획예산실-2729)

순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 건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제1항에 해당하는 건축물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조경기준의 옥상(벽면)조경을 조경면적의 50%이상 설치하되, 제1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옥상 바닥면적의 30%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설계 공모작 및 건축물의 구조 및 형태 등에 따라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아니할 수 있다.

1.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축법 제29조 규정에 따라 신축(증축) 하는 공용건축물 :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 제1호외 건축물 :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으로 조경면적이 3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26조(대지안의 조경) ① ~ ④ (생략)</p> <p>⑤ 제1항에 해당하는 건축물 중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신축하려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조경 기준에 의한 옥상(벽면) 조경을 조경면적의 30%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설계 공모 당선작, 생육환경상 불가능한 지역 등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아니할 수 있다.</p> <p><신설></p> <p><신설></p>	<p>제26조(대지안의 조경) ① ~ ④ (현행과 같음)</p> <p>⑤ 제1항에 해당하는 건축물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조경기준의 옥상(벽면)조경을 조경면적의 50%이상 설치하되, 제1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옥상 바닥면적의 30%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설계 공모작 및 건축물의 구조 및 형태 등에 따라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아니할 수 있다.</p> <p>1.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축법 제29조 규정에 따라 신축(증축) 하는 공용건축물 :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p> <p>2. 제1호외 건축물 :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으로 조경면적이 3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p>

순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3148호
----------	--------

- 제출자 : 순천시장
- 제출일시 : 2020. 3. 17.

1. 제안이유

- 과태료 관련 규정 정비(상위법 규정 준용 가능한 조문 삭제 등)

2. 주요내용

- 제4장 제목을 “포상금 지급” 으로 개정
- 제35조부터 제41조까지를 삭제하고, 제42조부터 제52조를 각각 제35조부터 제45조까지로 개정
- 별지 제10호 서식부터 별지 제18호 서식까지 삭제

3. 개정조례안 : 별첨

4. 관련법령 : 「폐기물관리법」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5. 관련부서 의견 : 해당 없음

6. 예산사항 : 해당 없음

7. 사전예고 결과

- 입법예고(2019. 11. 12. ~ 12. 2.)결과 : 의견 제출 없음

9. 사전협의(승인)사항

- 예산부서 심의필 : 해당 없음
- 규제개혁 심의필 : 해당 없음
- 법제부서 심의필 : 2019. 11. 1.(기획예산실-14191호)
- 법제부서 공고필 : 2019. 11. 12.(순천시 생태환경센터 공고 제2019-2호)
- 성별영향분석평가 : 2019. 11. 4.(여성가족과-22244호)

순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장 제목을 “포상금 지급”으로 한다.

제35조부터 제41조까지를 삭제하고, 제42조부터 제52조까지를 각각 제35조부터 45조까지로 한다.

별지 제10호 서식부터 별지 제18호 서식까지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장 포상금 지급 및 과태료의 부과·징수	제4장 포상금 지급
제35조(과태료의 부과·징수) 시장은 법 제68조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	<삭 제>
제36조(과태료 부과기준) ① 제35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8과 같다. 이 경우 하나의 부과행위가 다른 법률에서도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그 중 과태료가 많은 금액으로 한다. ② 시장은 과태료 금액을 정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삭 제>
제37조(의견진술 등) ① 시장은 제36조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그 상대방 또는 대리인에게 처분의 사전통지와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해당 과태료 부과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않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의견진술의 기회를 줄 수 없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의견진술은 별지 제10호서식의 의견진술통지서 및 별지 제11호서식의 의견서에 따른다.	<삭 제>
제38조(과태료 처분통지) ① 시장은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위반행	<삭 제>

현행	개정안
<p>위를 조사한 후 위반사항과 과태료의 금액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12호서식의 과태료 처분통지서와 별지 제13호서식의 과태료 납입고지서를 과태료 피처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p> <p>② 과태료 납부기간은 납부통지서 발부일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이 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납부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50일 이내에 10일간의 납부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14호서식의 과태료 납부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p> <p>③ 시장은 과태료 부과징수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것임이 확인된 때에는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하며,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라 피처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p>	
<p>제39조(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 ① 시장의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른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시장은 이를 검토하여 과태료 처분이 정당하다고 인정된 때에는 즉시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라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도 이의신청에 대한 검토결과와 법원에 통보한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p>	<p>〈삭제〉</p>
<p>제40조(과태료의 귀속) 과태료는 부과·징수한 자의 수입으로 하되,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하였을 때에는 국고에 귀속한다. 다만, 「질</p>	<p>〈삭제〉</p>

현행	개정안
<p><u>서위반행위규제법」 제43조에 따라 과태료 재판 집행의 위탁을 받은 경우에는 시 수입으로 한다.</u></p> <p><u>제41조(과태료 수납부 관리) 시장은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은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u></p> <p><u>제42조 ~ 제52조</u>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u><삭제></u></p> <p><u>제35조 ~ 제45조</u> (현행 제42조부터 제52조까지와 같음)</p>

[참고: 현행 조례 별지 10호 서식 ~ 별지 제18호 서식]

[별지 제10호서식]

의견진술통지서

순 천 시

문서번호

년 월 일

수 신

제 목 : 과태료 처분을 위한 의견진술 통지

아래의 과태료 처분 원인 사실에 대한 의견을 진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정된 과태료 처분			
과태료를 처분하고자 하는 원인이 되는 사실 및 법적근거	과 태 료 원인사실		
	법적근거		
의 견 진 술	부 서 명	담당자	
	주 소	전 화	
	기 한	년 월 일 까지	
기 타			

※ 유의사항

1. 귀하는 위 사항에 대하여 구술(행정청에 출석하여 진술하거나 전화)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의견진술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고 처리합니다.
3.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1항 및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의견진술기한 내에 자진납부 하시는 경우에는 과태료의 100분의20을 감경합니다.
4.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국민기초수급자, 한부모가족 보호 대상자 장애인(3급 이상), 국가유공자(상이등급 3급 이상), 미성년자는 본인이 감경대상자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주장하고 체납과태료가 없을 경우에 과태료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감경합니다
5.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십시오.
6. 그 밖에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진술 담당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순 천 시 장

[별지 제11호서식]

의견서(제37조 관련)

1. 관련 출석 요청서 : 제 호 (년 월 일)

2. 위반사항에 대한 의견유무 : 있음 . 없음

3. 소명요지(의견이 있을 경우) :

4. 기타(증거자료 등) :

년 월 일

주 소 :

생년월일 :

성 명 :

①

순 천 시 장 귀하

제 호

순 천 시

수 신

제 목 : 과태료 처분 통지

1. 귀하께서는 다음과 같이 「폐기물관리법」 제 조제 항의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있습니다.

가. 위반일시 :

나. 위반내용 :

2. 위의 위반사실에 대하여 「폐기물관리법」 제 조에 따라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니 년 월 일까지 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3.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을 경우에는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관할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됩니다.

첨 부 : 과태료 납부 통지서 1부

년 월 일

순 천 시 장 (인)

순천시

주소

□□□□ - □□□□

세외수입
고지서
증



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신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수납인과 취급담당자인이 없으면 영수증은 무효입니다.
* 공무원은 현금영수증 납부하지 않습니다.

순천시

납부번호	기관부서코드	연도	회계	과목	고지번호	검

(납부자보관용)

납부자 : _____ 주민등록번호 : _____
주소 : _____
부과대상 : _____

납부기한	까지	까지
과목	납기내금액	납기후금액
합계금액		
총체납금액		

부과내역

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상기 체납액은 별도의 고지서를 발급 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전화 :

*이 영수증은 5년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순천시



*납부장소 : 관내 금융기관, 전국우체국, 전국농협

순천시

수납의뢰서
(수납은행보관용)

세외수입 _____

납부번호					
------	--	--	--	--	--

납부자:

납기내금액	까지
합계금액	
납기후금액	까지
합계금액	

위의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순천시

순천시 O C R

납부번호	기관부서코드	연도	회계	과목	고지번호	검

(시청보관용)

세외수입

* 이 종이는 컴퓨터로 처리되므로 구겨지거나 더럽혀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십시오.

납부자 : _____ 주민등록번호 : _____
주소 : _____
부과대상 : _____

납부기한	까지	까지
과목	납기내금액	납기후금액
합계금액		

부과부서:
수납부서: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순천시



[별지 제14호서식]

제 호			
과 태 료 납 부 독 촉 장			
납 부 의 무 자	성 명		생 년 월 일
	주 소		
	상 호		소 재 지
과태료 납부통지서 번호			
위 반 사 항			
과 태 료 금 액		당 초 납 부 기 일	
<p>위의 과태료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에 납부 하시기 바랍니다.</p> <p>위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하게 됩 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순 천 시 장 (인)</p>			

[별지 제15호서식]

제 호

과 태 료 부 과 취 소(변경) 통지서

주 소 :

성 명 : 귀하

고 지 금 액	취소(변경)액	차 액	비 고

취소(변경)사유 :

년 월 일

순 천 시 장 (인)

[별지 제16호서식]

제 호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신 청 인	성 명	(한자)	생년월일	
	주 소			
	상 호			
과 태 료 처 분 내 역	부과기관		납부통지서 번호	
	고지받은 일자		과태료금액	
	과 태 료 처분사유			
과태료 처분에 대한 불복사유				
<p>「폐기물관리법」 제68조제 항에 따라 위의 과태료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신 청 인 인</p> <p>순 천 시 장 귀하</p>				

[별지 제17호서식]

제 호

수 신

제 목 :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 제기 통보

1. 「폐기물관리법」 제 조와 관련입니다.
2. 「폐기물관리법」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을 한 바 본인으로부터 다음과 같이 이의제기가 있으니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과태료재판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 태 료 처 분 에 대 한 이 의 제 기 자	성 명	(한자)	주민등록 번호	
	주 소			
	상 호		소재지	
과 태 료 처분내역	과태료납부 통지 일자		과 태 료 금 액	
	부과 관청		이의제기 일자	

- ※ 첨부 : 1. 과태료 처분 통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 신청서 사본 1부

순 천 시 장 (인)

순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3149호
----------	--------

- 제출자 : 순천시장
- 제출일시 : 2020. 3. 17.

1. 제안이유

- 상위법령의 위임 범위와 다른 규정 개정 및 정비

2. 주요내용

- 주민편익시설 면적을 포함하도록 한 부분 삭제
 - 시설부지 매입 소요 비용의 산정(안 제8조)
 - 폐기물처리시설 부지소요면적 산정기준(별표1)
- 주변 영향지역의 지원 삭제
 - 기금의 용도(안 제13조)

3. 개정조례안 : 별첨

4. 관련법령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택지개발사업에 다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등)

5. 관련부서 의견 : 해당 없음

6. 예산사항 : 해당 없음

7. 사전예고 결과

- 입법예고(2020. 1. 15. ~ 2. 4.)결과 : 의견 제출 없음

8. 사전협의(승인)사항

- 성별영향분석평가 : 2020. 1. 9.(여성가족과-645호)
- 예산부서 심의필 : 해당 없음
- 규제개혁 심의필 : 해당 없음
- 법제부서 심의필 : 2019. 12. 30.(기획예산실-17532호)
- 법제부서 공고필 : 2020. 1. 15.(순천시 생태환경센터 청소자원과 공고 제2020-3호)

순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호 중 “시설설치와 주민편의시설 설치” 를 “시설설치” 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시설설치 및 주변 영향지역의 지원 등에” 를 “시설설치에” 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폐기물처리시설 부지소요면적 산정기준(제8조 관련)

가. 시설부지 면적

구 분		소 요 면 적	비 고
폐기물 처리시설	100톤/일 이하	40m ² (12평)/톤	1기 기준 4,000m ² (1,200평) 이하
	100~300톤/일	30m ² (9평)/톤	1기 기준 4,000m ² (1,200평) 이하
	300~500톤/일	20m ² (6평)/톤	1기 기준 4,000m ² (1,200평) 이하
	500톤/일 초과	10~15m ² /톤 (3~4.5평)	1기 기준 4,000m ² (1,200평) 이하
관리동	500톤/일 이하	330m ² (100평)	작업인원 35~50명 기준
	500톤/일 초과	500m ² (150평)	작업인원 50~70명 기준
세차동 등 기타시설	500톤/일 이하	330m ² (100평)	-
	500톤/일 초과	500m ² (150평)	-
건폐율		40% 이하	계획관리지역 기준

나. 주변녹지대 설치 면적

- 1일 처리능력 50톤 이상 300톤 미만 시설인 경우 폭 10m 이상
- 1일 처리능력 300톤 이상 시설인 경우 폭 20m 이상

총 부지면적 = 시설부지 면적(가) + 주변녹지대 면적(나)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8조(시설부지 매입 소요 비용의 산정) 부지매입에 소요되는 비용은 부지매입단가와 부지면적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다음 각 호를 적용하여 산정한다.</p> <p>1. (생략)</p> <p>2. 부지면적은 <u>시설설치와 주민편의시설 설치</u> 및 주변녹지대 설치에 필요한 면적을 합하여 산출하되, 구체적인 기준은 별표 1과 같다.</p>	<p>제8조(시설부지 매입 소요 비용의 산정) --- ----- ----- -----.</p> <p>1. (현행과 같음)</p> <p>2. ----- <u>시설설치</u> ----- ----- ----- -----.</p>
<p>제13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시설 설치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한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로부터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를 위한 시설의 부지매입과 <u>시설설치 및 주변 영향지역의 지원</u> 등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여야 한다.</p> <p>② (생략)</p>	<p>제13조(기금의 용도) ① ----- ----- ----- ----- ----- <u>시설설치</u> ----- -----.</p> <p>② (현행과 같음)</p>
<p>[별표 1] 폐기물처리시설 부지소요면적 산정 기준</p> <p>가. 시설부지 면적 (생략)</p> <p>나. 주민편의시설 면적</p> <p style="padding-left: 20px;">○ <u>시설부지면적의 10% 적용</u></p> <p>다. 주변녹지대 설치 면적</p> <p style="padding-left: 20px;">○ (생략)</p> <p style="padding-left: 20px;">○ (생략)</p> <p>□ 총 부지면적 = <u>시설부지 면적(가) + 주민편의시설 면적(나) + 주변녹지대 면적(다)</u></p>	<p>[별표 1] 폐기물처리시설 부지소요면적 산정 기준</p> <p>가. 시설부지 면적 (현행과 같음)</p> <p><삭 제></p> <p>나. 주변녹지대 설치 면적</p> <p style="padding-left: 20px;">○ (현행과 같음)</p> <p style="padding-left: 20px;">○ (현행과 같음)</p> <p>□ 총 부지면적 = <u>시설부지 면적(가) + 주변녹지대 면적(나)</u></p>